

법무매거진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까지 연장... '몰래 변론' 처벌 강화한다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를 막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변론 단계부터 검찰 수사, 사후 징계까지 단계적 방안을 마련했다. 사건 수임 단계에선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관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검 차장검사와 지법 수석부장관사,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퇴직 공무원의 수임제한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그 외 전관 변호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간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전관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에 대해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관특혜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돼온 몰래 변론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현행 변호사법상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적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순한 몰래변론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을 세웠다. 조세포탈 등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취급한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화 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변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전화 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는 담당 검사의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라는 요청에 한해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변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담당 변호인과 전관 여부 등을 수사기관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기로 했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통로인 이른바 ‘법조 브로커’ 퇴출을 위해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사건 수임을 위해 특정 공공기관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기존 검찰·법원 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

(출처/경향신문)